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및 예방 관리 : 부당회수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2022.1.1 개정)



01

참여연구자에게 인건비 또는 학생 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02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한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03

참여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는 행위



04

연구근접인력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사용하는 행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3조 [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 등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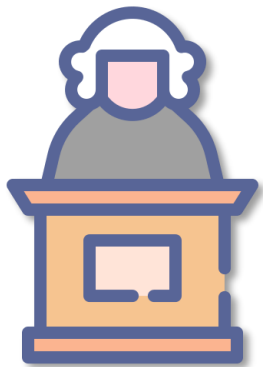
- ①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참여연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개발비에서 사용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는 행위(이하 "연구개발비사용액부당회수"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인건비부당회수등"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구비 부정집행 서류조작, 업체와의 담합, 학생인건비 갈취 등 고의적 행위로 연구비를 해당 연구과제 외의 목적으로 사용했거나,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챙긴 경우

c f. 연구비 부적정집행 : 연구비를 해당 연구수행에 사용했지만 실수 또는 부주의로 인한 증빙서류 미비, 연구비 사용계획 변경 시 전문기관 미 승인, 경미한 규정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비 부정집행 제재처분

- ❖ 부정집행한 연구비 회수뿐만 아니라 해당과제의 총연구비 환수 처분, 이후 연구과제 참여제한, 제재부과금 처분 등 추가로 참여기간 합산방식을 명확히 하여 제재 수위 강화
- ❖ 부정집행이 행해진 모든 연구과제들의 참여제한 기간(과제당 최대 5년)을 합산하도록 통일 (현재는 전문기관이 임의로 결정)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및 예방 관리 : 연구참여확약서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외 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 및 학생연구자 !은 다음과 같이 학생연구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신의와 성실로 준수하기 위해 동 연구참여확약서를 체결한다.

3. 기타 확약사항

- 가. 학생연구자는 연구 수행에 필요한 담당 업무를 성실히 수행 한다.
- 나.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정당한 학업활동 및 연구활동, 충분한 휴식 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학생연구자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한다.
- 다.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연구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연구참여확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하지 않는다.
- 라. 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통합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학생연구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123조의 2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또는 상해·사망에 대비한 보험가입 등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마. 계정책임자는 인권, 양성평등,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학생연구자에게 폭언·폭행·성추행 및 성희롱 등을 포함한 제반 권리를 침해 하지 않는다.
- 바.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학생인건비부당회수)하지 않는다.
- 사. 학생연구자는 계정책임자가 연구참여확약서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연구개발기관에 사정을 요구 할 수 있다.
- 아. 기관의 장은 학생연구자가 타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원 소속기관에 학생인건비 지급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자.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가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연구참여확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연구과제 참여 신청 승인 시

통합과제관리시스템을 통해 학생연구자를 위한 연구참여확약서의 확약 기재사항 등 주요 내용 확인



개인별로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개인 유용하거나 재분배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의 처우, 인권 및 권익보호, 학생인건비의 체계적인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준수해야 할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연구개발기관의 의무]

1.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인권 보호 및 관리·감독 등 학생연구자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생연구자의 연구참여확약서 체결, 상해·사망에 대비하는 보험 또는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건비 부당회수(미지급 포함) 방지에 관한 사항

제8조 [연구참여확약체결]

② 연구참여확약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연구 주제 및 분야, 주요 참여과제명, 연구수행내용, 역할, 참여기간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금전적 보상,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안전 및 인권·권리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업무와 무관한 업무는 명시 할 수 없다.





제14조 [학생인건비 안정적 지급]

- ① 연구개발기관은 학생인건비를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기관 내 학생인건비 산정 기준 마련, 균등지급 체계 마련, 학생인건비 자원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연구참여정도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산정하며, 연구성과에 따라 연구수당·기술료 보상을 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누구든지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연구개발기관은 학생인건비의 부당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 규정

세부 내용은 협성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및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내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 (2022.04.23 개정)' 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